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57
----------	----

발의연월일 : 2006년 12월 5일
발 의 자 : 김인수 · 김범기 · 이언구
김희수 · 오용식 · 최재욱
한창동 · 송은섭 · 심홍섭
(9인)

제정이유

-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며 도민의 건강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안 제2조)
-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취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며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충청북도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사용)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범도민 체육 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